

2023년도 학교시설 안전점검 결과(여름철)

1. 근거 :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①항,③항

-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부 소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2. 점검결과

[해빙기]

점검대상	점검방법	점검기간	점검결과 (안전등급)	점검 후 조치사항
교사동 전체	민관합동점검 (대상시설물에 대한 육안점검)	'23.6.2(금) ~ 6.9(금)	B등급	
급식실	“	“	A등급	
체육관	“	“	A등급	
창고	“	“	A등급	
사택A동	“	“	A등급	

3. 점검결과 공개방법

-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(에듀빌)에 점검결과 입력 및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점검결과 게시

2023년 6월 19일

경북중학교장